자산보관 • 관리보고서

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재산을 보관• 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"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" 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신탁업자명 : ㈜ 한국씨티은행
문의가능 전화번호 : (02) 3455-2504 / 3455-2567

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:
하나UBS 아시안리츠 부동산 투자신탁(재간접형)
(종류형 A, 종류형 C, C-I, C-F, C-W)
나. 집합투자기구 분류: 부동산집합투자기구(재간접형), 신탁형, 공모형, 개방형, 추가형, 종류형
다. 보관 • 관리기간: 2012.05.15 - 2013.05.14
라. 집합투자업자: 하나UBS자산운용(주)
마.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: 광주은행, 대우증권, 동부증권, 동양증권, 미래에셋생명, 미레에셋증권, 삼성증권, 신한금융투자, 외환은행, 우리은행, 우리투자증권, 유진투자증권, 제주은행, 키움증권, 하나대투증권, 한국투자증권, 현대증권, HMC 투자증권

2.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

- 2012.10.30 규약 변경

1) 제4조의3(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명칭 및 업무위탁의 책임) ①항 :
해외운용회사 Macquarie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삭제 및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L.P. 및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Australia Pty Ltd. 추가

- 2013.03.25 규약 변경

1) 집합투자업자명 변경
골드만삭스자산운용(주) ---> 하나UBS자산운용(주)

2) 집합투자기구명 변경
골드만삭스 아시안리츠 부동산 투자신탁(재간접형)
---> 하나UBS 아시안리츠 부동산 투자신탁(재간접형)

3) 제4조의3(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명칭 및 업무위탁의 책임) ①항 :
해외운용회사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L.P. 삭제

4) 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), 제39조(보수) : 종류 C수익증권 판매보수 인하 및 종류 C-F 수익증권 신설
1. 종류 C수익증권 판매보수 : 1.275% -→ 1.1%
2. 종류C-F 수익증권

구분	집합투자업자	판매회사	신탁업자	일반사무관리
종류 C-F	연 0.55%	연 0.05%	연 0.05%	연 0.025%

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

- 해당 사항 없음.

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

- 2013.02.0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과 관련하여 총회 결의 있었음.

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

- 해당 사항 없음.

6. 회계감사인의 선임 • 해임에 관한 사항

선임일자	회계 감사인명	계약기간	감사보수 (원)	계약방법
2006.07.10	삼일 회계법인	1년 (자동연장)	2,024,000	서면계약

* 회계감사인 선임비용은 1년에 한번 회계감사수행을 위해 집합투자기구에서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용임.

7.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

□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
-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합니다.

□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- 신탁업자가 보관·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 및 집합투자업자로부터 통보 받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□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- 본 집합투자기구는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.

□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를 공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.

□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
-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습니다.

□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신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
- 2013.03.26 외국집합투자증권 투자비율 50% 이상 항목에서 위배 발생하여 2013.03.29 시정요구 하였으며 2013.03.29 위배 해소 하였음.

□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
-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1항 제1호 (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 감시의무 면제)에 해당되어 본 항목은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닙니다.

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집합투자기구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, 투자원리금에 손실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.

-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투자 등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 판매회사, 집합투자업자(www.ubs-hana.com) 및 금융투자협회 (www.amak.or.kr)의 홈페이지를 이용 할 경우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- 이 집합투가기구는 해외자산 결제 및 보관을 위하여 씨티은행 홍콩(Citibank N.A. Hong Kong Branch)을 해외보관 대리인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해외보관 대리인은 동 업무를 각국의 보관 대리인에게 재위임 할 수 있습니다.